



# 행동 규범

2월 1일 2014년

**표준:** CAC의 공급 업체 및 계약 업체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기준과 관행을 준수하여 사업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CAC의 공급 업체 및 계약 업체는 제품이 제조되는 국가의 모든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행동 규범과 제품이 제조되는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에 저촉이 있을 때에는, 더 높은 기준이 우선합니다.

**고용관계:** 고용주는 근로자를 존중하는 고용조건과 법을 채택하고 준수해야 하며, 고용인들의 권리를 국내 및 국제 노동 및 사회 보장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어떠한 사람도 성별, 인종, 종교, 나이, 장애, 성적 취향, 국적, 정치적 견해, 사회 집단, 민족적 출신에 따라 채용, 보상, 승진, 징계, 해지 또는 퇴직등의 고용 차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괴롭힘 또는 남용:** 모든 직원은 존중받고 예우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직원도 신체적, 성적, 심리적, 언어적 희롱이나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강제 노동:** 강제 노동, 죄수 노동, 도제 노동, 담보 노동이나 강제 노동의 다른 형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성년 노동:** 15세 미만 또는 그 이상인 의무 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나이의 미성년 직원은 고용될 수 없습니다.

**단체 조직 및 단체 교섭의 자유:** 고용주는 단체 조직의 자유와 단체 교섭에 대한 직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건강, 안전, 환경:** 고용주는 고용주의 시설 운영과 작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작업장의 부정적인 환경의 완화를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택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정규 및 초과 근무 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규 근무는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7일 간격으로 최소한 연속 24시간의 휴식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초과 근무는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주는 정기적으로 초과근무를 요청하지 않으며, 할증 임금으로 모든 초과 근무를 보상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7일간 총 정규 및 초과 근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상:**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어느 정도의 재량 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일반 정규근무 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적어도 최저 임금 또는 그 이상인 적절한 현행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임금에 대한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법률 또는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부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상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 못하고 어느 정도의 재량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각 고용주는 점진적으로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재량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FLA와 노력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 직원 안전 / 권리 위반 주장

모든 직원은 위에 나열된 행동 규범을 위배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경우에는 CAC 운영부에 이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Joann Mun

E-메일: [joannm@colosseumusa.com](mailto:joannm@colosseumusa.com)

전화: +1-888-538-8991

위의 경로를 통한 보고는 철저한 보안과 함께 비밀이 보장됩니다. 어떠한 보고자도 이에 대해 처벌이나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